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0-33호

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「인터넷 우표 시험적서비스」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.

2010년 6월 29일

우정사업본부장

인터넷우표 시험적서비스 시행 공고

1. 인터넷우표 정의 : 고객이 인터넷우체국(www.epost.kr)을 통해 우편 요금을 지불하고 직접 인쇄하여 사용하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
2. 인터넷우표 요금체계 : 현행 통상우편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적용
3. 시험적서비스 운영기간 : '10. 7. 1 ~
4. 교환 대상에서 제외 : 인터넷우표는 수취인 주소가 포함되어 있어 미사용 인터넷우표를 우체국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재판매 할 수 없으며 또한 고객에게 재 출력 기회를 부여하므로 교환 대상에서 제외
5. 재 출력 : 우체국 전산망 또는 프린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비정상

으로 출력된 경우와 유효기간 경과된 인터넷우표 등 우정사업본부장이
다시 출력하여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 출력
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

6. 유효기간 : 국가기관이 아닌 개별고객의 프린터에서 출력하여 사용
하므로 인터넷우표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으며, 장기 보관에 따른 훼손
우려가 있어 출력 후 1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
7. 부착위치 : 우표류의 부착위치는 우편물 오른쪽 상단이나 인터넷
우표 라벨출력인 경우 수취인주소 왼쪽에 표시할 수 있음
8. 문의처 : 우정사업본부 새주소우편전략팀 (☎ 02-2195-1581, 1585)